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73 발 의 년 월 일: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:아이수루 의원(1명) 찬 성 자:강동길, 경기문, 김규남,

김기덕, 김영옥, 김용일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천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도문열, 막성호, 박강산, 박 석, 박실성, 박환희, 봉양순, 사상열, 서준오, 수명철, 수경택, 송도호, 유만희, 이성라, 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임종국, 정준호, 이보형, 임종국, 정준호, 정진술, 황유정 의원(44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관광취약계층은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「장애인복지법」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등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 중 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, 장애인, 임산부,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등의 '무장애 관광' 정책을 시행 중임.
- 따라서 시민 관광복지를 확대하는 '무장애 관광'을 환경적, 정보적, 서비스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 에 명문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무장애 관광과 관광약자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무장애 관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,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관광취약계층"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제 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2. "관광약자"란 관광취약계층, 장애, 노렁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.
- 3. "무장애 관광"이란 관광지,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·이용·이 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무장애 관광 지원)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,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관광취약계층" 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 라 한다)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 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<u><신 설></u>	1. "관광취약계층"이란 「관광진흥법 시 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 다.
<u><신 설></u>	2. "관광약자"란 관광취약계층, 장애, 노 령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3. "무장애관광"이란 관광지,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·이용·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 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5조의2(무장애 관광 지원) 시장은 관광 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 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,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